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7.

발 의 자 : 이양수 · 박준태 · 서범수
김소희 · 강대식 · 김미애
이달희 · 박정하 · 이현승
이종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.

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,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의료로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).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항에 따른 진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의료기관”이라 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① (생 략)	제7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<u>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 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.</u>	② <u>제1항에 따른 진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.
(신 설)	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 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</u>
(신 설)	2.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 기관(이하 “공공의료기관”이라 한다)</u>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